

○ 사업추진방향

이 지역의 특징은 대규모의 4개 방적업체가 총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수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수검진 항목중 소음부문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직업성난청을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광산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 산업보건연구소와 계속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강화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를 찾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의 역군으로서 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단순히 진단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근로자와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질병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당병원의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더욱 성실하고 성의있게 산업보건에 임할 방침이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 직원들과 이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 해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해설

노동부 산업안전과 제공

第5章 補 則

第40條 (讓渡 등의 금지) 第37條의 规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 또는 押留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第41條 (時效) 第23條 第1號의 规定에 의한 負擔金을 徵收할 權利와 第37條의 规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第42條 (申告)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이 때에는 事業主는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

타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 (記錄의 보존) 事業主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의 記錄과 胸部엑스線寫眞 및 第20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와 처리결과에 관한 書類를 7년간 保存하여야 한다.

第44條 (보고·출석 등의義務) 事業主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第45條 (權限의 委任)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規

定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非營利法人을 지정하여 委託할 수 있다.

第 46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勞動部管轄地方事務所長에게 위임되는 사항(令 第 32 條)

— 法 第 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者의 指定

— 法 第 7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 및 指示

— 法 第 19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의 發給

— 法 第 20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轉換措置의 勸告 또는 指示

— 法 第 51 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 · 徵收

第 6 章 罰則

第 47 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9 條 내지 第 11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 20 條 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塵肺에 걸린 者를 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採用하거나 第 20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에 위반한 者

3. 第 21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勞動者の 請求에 불구하고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者 또는 退職金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勞動者를 解雇하거나 계속 勞動年數의 算定에 있어 당해 勞動者에게 불이익한 處遇를 한 者

4. 第 42 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이유로 勞動者에게 解雇 기타 불이익한 處遇를 한 者

第 48 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3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機關의 作業環境測定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同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指示에 위반한 者

2. 第 15 條 第 1 項 및 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의 實시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勞動部長官 또는 事業主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者

3. 第 20 條 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時間短縮, 作業場所 變更 등의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第 49 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的代理人 ·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 47 條 및 第 48 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50 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 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1. 第 7 條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第 15 條 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第 43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個人別健康診斷結果表, 胸部엑스線寫眞 및 作業轉換에 관한 書類를 7年間 보존하지 아니한 者

②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 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 · 기피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에 대하여는 100 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第 51 條 (過怠料의 賦課 · 徵收節次) ① 第 50 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 · 徵收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 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1985 年 4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20 條 第 2 項 · 第 37 條 및 第 38 條의 規定은 1985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이미 退職한 劳働者에 대한 慰勞金支給 등) ① 1985 年 3 月 31 日 이전에 退職한 劳働者로서 塵肺를 이유로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한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한다.

② 1985 年 6 月 30 日 이전에 劳働者가 塘肺로 인하여 退職 또는 死亡하여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 또는 遺族給與의 支給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劳働者가 1985 年 7 月 1 日에 退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보아 第 37 條 및 第 38 條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을 支給하되,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

基準이 되는 당해 劳働者의 平均賃金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은 1985 年 7 月 1 日부터 1988 年 6 月 30 日까지 3 年間 分割하여 支給하되,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이 100 萬 원 미만인 경우에는 全額을 1985 年 7 月 1 日부터 1986 年 6 月 30 日까지 일시에 支給할 수 있다.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에 소요되는 금액중 1985 年 3 月 31 日 이전에 劳働者가 退職 · 死亡하여 障害慰勞金 및 遺族慰勞金의 支給에 소요되는 금액의 2 分의 1 은 石炭礦業育成에 관한臨時措置法 第 6 條의 規定에 의한 助成事業費에서 부담한다.

⑤ 勞動部長官은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助成事業費에서 부담할 금액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動力資源部長官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日 이내에 塘肺基金에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평균임금 : 법 부칙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통계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5년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동 보고서에 의한 해당업종별 1985년 1 월부터 3 월까지의 월별임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9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함 (영 부칙 제 2 조).